

2014-2호
(2014.9.29)

UNIST 청렴 알리미



청렴 위반사례 – 이리시면 안 됩니다!

■ 납품 청탁 의뢰 교육청 사무관 징역1년6월

(2014.09.29, 울산매일)

학교 공사와 납품 편의를 봐주겠다며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비리를 저지른 울산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잇따라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뇌물수수죄로 구속 기소된 울산시교육청 사무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함께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335만원을 선고했다. 시교육청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 사무관인 A씨는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학교 신축공사, 체육관, 강당 신축공사 등을 맡은 업체들로부터 공사와 납품 편의 명목 등으로 모두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품과 관련한 권한을 이용해 대가를 챙기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학교시설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교육청 직원에 대한 뇌물수사가 진행되자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연락처를 지우는 등 범행 증거를 숨기려 했다”라고 덧붙였다. 울산지법은 앞서 지난달에도 같은 죄로 구속 기소된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6급 공무원 B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75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시교육청 학교시설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비리를 수사하면서 교육감 사촌동생 2명을 포함해 교육청 직원, 브로커 등 총 8명을 구속했다.

윤리·청렴규범 – 생활화 합시다!

[임직원 행동강령 발췌]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